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6. 27 선고 2023가단12871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6. 27.

주 문

- 피고와 소외 C 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2023. 6. 2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-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 방법원 연천등기소 2023. 9. 4. 접수 제10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(무변론판결)

판사 오성우

별지